

입 법 정 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 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목 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1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2
4.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 5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6
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8
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9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0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3

1.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13
2.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 14
3.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14
4.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7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 12. 08. 시행 `20. 12. 08.]

1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6, 1746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32, 54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상 정부는 재해 · 가축질병 ·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가에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국가의 긴급방제명령에 따라 식물을 매몰 처분하고, 매몰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병해충 병원균을 갖는 식물을 심거나 재배할 수 없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화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수 있는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유에 병해충을 추가하는 한편,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 6. 9. 시행 `20. 12. 10.]

소관부서 :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 6. 9. 및 시행 `20. 12. 10.]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빅데이터분석활용과), 044-205-2282

■ 제정이유

- 국민 생활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정의함(제2조제2호).
- 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둠(제5조).
-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 라.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요청하도록 함(제8조 및 제10조).
- 마. 다른 법률 등에서 비밀로 규정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바.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 법인 등에 소관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사.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제1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제18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20조).

차.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하도록 함(제22조).

■ 개정이유

-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되도록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6025호, 2018. 12. 24. 공포)됨에 따라, 여권정보연계시스템 이용 신청 및 심사,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차세대 전자여권의 표지와 색상, 면수 등을 정하고, 여권 재발급 등의 경우 여권 발급 신청인이 여권 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 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가. 차세대 전자여권의 규격 등(제2조)**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됨에 따라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등 여권의 종류별로 각각 표지, 색상 및 면수를 정함.

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제3조의3 신설)

외교부장관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보관·관리하는 정보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해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제44조의2 신설)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이용 범위 및 안전관리대책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그 신청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심사하여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 12. 22. 및 시행 `20. 12. 22.]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7

■ 개정이유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법령 등에 대한 조사·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보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 나. 공공기관에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함(제6조제1항 및 제2항).
-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개별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함(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진행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도록 함(제9조제1항제5호, 제9조제4항 신설).
- 마.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함(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제2호 신설).
- 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추가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한편,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의2 신설).

사.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법령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2조 및 제23조).

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안건 `20. 12. 22. 및 시행 `20. 1. 23.]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기점검·수시점검에서 기저귀교환대가 일정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안전관리를 위한 규격 설정이 필요함.
- 이에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 12. 22. 시행 `21. 6. 23]

소관부서 :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 044-203-6529

■ 개정이유

-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바, 오피스텔 개발사업도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동주택 범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임.

- 한편,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 규정을 두어 취학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지만, 교육감이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 사항은 알 수 없어 해당 지역의 유발 학생수를 추정하지 못하여 학교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허가 등의 현황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
- 나.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일부개정 20. 9. 29. 및 시행 20. 12. 30.]

소관부서 :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6

■ 개정이유

- 실제 현장에서 감염병을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의무,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 권한, 관계 기관 등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 및 의심자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함.
-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불필요한 정보의 제외·삭제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지원과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원

(轉院) 등의 조치권자에 보건의료 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함.

○ 감염병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 조치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 제한, 위치정보 수집, 감염 여부 검사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함.

그밖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제3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나.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의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제34조의2).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의4 신설).

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 등,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의5 신설).

- 마. 환자의 증증도 변화 등에 따른 전원 등의 조치권자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함(제41조제3항).
- 바. 감염병의심자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위치정보 수집, 감염 여부 검사 근거를 마련함(제42조제2항).
- 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에 방역지침 준수명령,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 동원 등을 추가하고, 소독조치 대상을 오염이 확인된 건물 외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장소까지 확대하며,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49조).
- 아.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도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 권한을 부여함(제60조의3제2항).
- 자. 감염병환자 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에 현장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및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함(제64조, 제65조 및 제67조, 제70조의6 신설).
- 차.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0조의5 신설).
- 카.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업무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근거를 마련함(제74조 및 제78조제3호).
- 타. 감염병환자 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권자에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를 포함함(제76조의2 및 제79조의2).

1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제정 및 시행 `20.12. 28.]

**■ 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이 높아진 최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관광문화를 통한 합리적 대응을 모색함과 동시에,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구현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시장은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함 (안 제7조).
- 시장은 스마트관광의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2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 및 시행 `20.12.17.]

■ 제정이유

-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른 통폐합 학교 및 소규모 학교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교육력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적정규모학교의 운영 및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8조)
-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안

[제정 및 시행 `20.12.29.]

■ 제정이유

- 지역 청년의 고용 및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추진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은 미취업 청년(19세부터 34세까지)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구직지원 활동 활성화, 지원, 청년구직지원 종합운영 시스템 구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구직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4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 및 시행 `20.12.29.]

■ 개정이유

- 울산지역은 우수한 기술, 인프라 및 인재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에 따라 기술기반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기술기반창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장이 기술기반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조제7호 신설)

나.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신설)

다. 시장은 창업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창업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매출 및 투자유치 실적 등이 우
수한 기업을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7조의2부
터 및 제7조의4까지 신설)

1

지방의료원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조의2 등 관련)

[의견20-0265, 충청남도]

■ 질의요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 「모자보건법」 제15조에서는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각주: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하고,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하며(「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 이하 같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4조제1항), 지방의료원을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따라서 지방의료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지방의료원이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 설치·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료원법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료원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제6조제1항제4호), 지방의료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제16조),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제20조),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제21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등(제23조),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의 파견(제25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둬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스스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의 지시를 받아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료원이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법 제27조에서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도 독립된 법인격 주체인 재단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운영권을 재단법인 대신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모자보건법」에서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산후조리원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15조의17) 그와 달리 지방의료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료원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

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 12. (생략)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6조(정관) ①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사업에 관한 사항

5. ~ 12. (생략)

② (생략)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영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운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운영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와 이행정도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을 해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 조 등 관련)

[의견20-0251, 세종특별자치시]

■ 질의요지

- 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정기회의에 불참하여 해촉되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혀 사퇴한 경우 그 날부터 2년 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2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29조제4항),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제29조제1항),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제2항).

이처럼 주민자치회 설치의 근거법률인 지방분권법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즉 해촉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원하는 다른 주민에게 기회를 주고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위원의 회의 불참횟수 등을 고려하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그러한 경우를 해촉 사유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분권법 제29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및 위촉과 관련하여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는 적극적 요건 뿐 아니라 소극적인 요건도 포함될 것이며, 주민에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도 아니므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기준을 정한다고 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풀뿌리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운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양한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회의 불참으로 해촉되었던 위원 또는 사퇴한 위원 등에 대하여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분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인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경력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의견20-027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질의요지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경력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지?

■ 의견

○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 즉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 사무에 대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하나의 조례에 여러 관련 법령의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거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무나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에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 마련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25)에서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력단절여성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력단절여성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외에 지원이 필요한 여성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 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의 경우 국민들의 법령용어에 대한 혼란 방지 등 다른 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법령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법규에서 정의 규정은 그 자치법규의 해석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퇴사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경력단절여성법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성동구조례안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을 정의하면서 경력단절여성법의 정의와 달리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퇴사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을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성동구조례안”이라한다)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동구조례안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퇴사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 등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경력단절여성법 상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을 포함하도록 규정(제4조제2항제3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해당 대상을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와 별도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성동구조례안에 규정하거나 경력단절여성법에서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에 경력단절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을 포함하여 다른 용어로 약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약칭:경력단절여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등 관련)

[의견20-0237, 대전광역시]

■ 질의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제5호)으로, 국토계획법 제49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제1항제1호),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제1항제3호) 등을 규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4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제1호), 보전관리지역(제1호의2)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제1호의3)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환경에 대한 사항을 고려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16-2에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한 지역 등의 경우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각 호(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규정하면서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제2호)”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제4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계획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할 때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할 구역이나 지역 및 경관상세계획을 원칙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역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특정하여 규정하면서 조례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해당구역의 용도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이 아닌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제6호)을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의견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 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8의3. 도시지역 내 유허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 ④ (생략)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화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3.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1의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 15. (생략)